

의무위반사실 통보서

(00-0000-0000)

제 0000-00000 호

수 신:

제 목: 의무위반사실 통보

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합니다)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,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무위반자	성 명			
	주민등록번호	- (세)		
	주 소			
의무위반사실	일 시	년 월 일 시 분		
	장 소			
	내 용			
적용법조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2호)		
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,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3호)		
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4호)		
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4호의2) []아동보호전문기관 등예의 상담 및 교육 위탁(법 제19조제1항제5호) []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예의 위탁(법 제19조제1항제6호)		
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은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5호) []사회봉사·수강명령(법 제36조제1항제4호) []보호관찰(법 제36조제1항제5호) []감호위탁(법 제36조제1항제6호) []치료위탁(법 제36조제1항제7호) []상담위탁(법 제36조제1항제8호)		
통보인 인적사항	성 명		소 속	
	전화번호		직 급	

소속:

사법경찰관리(상담원 등)

(서명 또는 인)